

## 민 법

문 1.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소급하여 복귀한다.
- ② 해제조건부 증여에 있어서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내에서는 무효이고,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,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.
- ③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지만,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승낙의 법률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지만,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,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도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.
- ⑤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,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
문 2.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의 정관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 종중규약은 유효이다.
- ②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, 여기서 '목적의 범위 내'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, 간접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해석된다.
- ③ 정관규정에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므로, 청산인이 이러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이사회결의없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-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.
- ⑤ 사단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,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.

문 3.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와 임차인의 임차주택 입주, 주민등록 전입신고,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구비가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임차보증금(7,000만원)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.
-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의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각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는바, 그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.
- ④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(이른바 당해세)와 그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전후에 의하여 저당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.
- ⑤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

문 4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?

- ①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,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,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.
- ②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③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.
- ④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,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- 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.

문 5.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,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.
-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,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임차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어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, 화재원인이 불명인 때에도,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.
-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, 잔대금 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, 매수인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.

문 6.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인(私人)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.
- ④ 상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수한 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
- ⑤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지만,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는 경우,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.

문 7.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, 그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더라도,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
- ②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양수인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, 채무자는 그러한 특약의 유효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.
- ③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, 이 때 압류채권자의 선의, 악의 여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.
-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,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는 부적법하다.
- 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,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해 수표의 반환 없는 원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문 8. 다음은 선의, 악의 여부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특정물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.
- ②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, 그 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, 매도인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③ 정관에 법인이사의 대표권의 제한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④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였으나, 그 취소 전에 보험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보험자는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, 피보험자가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.
- ⑤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명의로 미성년자를 위한 대리행위를 하였는데,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,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다.

문 9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甲과 乙이 내부적으로는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린 경우,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.
-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,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라 하더라도,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.
- ③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, 이 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.
- ④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,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.
- 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거래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,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 신청 전(前)단계에서 허위표시임을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,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.

문 10. 다음 기술 중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이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乙에게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이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주었는데,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발생원인이었던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
- ② 금치산자인 甲이 심신상실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준 경우
- ③ 甲이 乙로부터 토지구입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주었는데, 그 매매계약이 丙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었고, 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
- ④ 한정치산자인 甲이 후견인의 동의없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경료해 준 후, 乙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丙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에게 경료해 준 경우
- ⑤ 乙女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甲男이 그 대가로 A 토지를 乙女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乙女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

문 11.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토지, 공장 등의 부동산 그리고 각종의 기계나 부품, 생산품 등은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이 때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그 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등기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.
- ②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,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의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 등이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.
- ③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.
- ④ 토지의 개수, 면적 등 현황은 그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에 따른다.
- ⑤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,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.

문 12.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?

- ① 소유명의자는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, 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 또는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,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.
- ② 유효한 명의신탁계약이 시효완성 후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, 점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③ 시효완성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.
- ④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로는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,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⑤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안 소유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, 그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.



- 문 18. X 토지에 관하여 甲, 乙, 丙이 각각 지분비율 1/2, 1/4, 1/4로 공유하고 있다.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만약 甲, 乙, 丙 사이의 등기부상 지분비율 1/2, 1/4, 1/4과는 달리 실제 지분비율이 甲 3/5, 乙 1/5, 丙 1/5 이라면 甲이 X 토지를 乙, 丙과 협의 없이 丁에게 임대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한 것이다.
  - ② 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X 토지에 대한 乙의 지분은 상속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귀속하고,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.
  - ③ 점유자 A가 X 토지 전체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, 시효기간 완성 당시 공유자인 甲, 乙, 丙 중 丙으로부터 그 지분 1/4을 취득한 제3자 丁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.
  - ④ 甲, 乙, 丙이 공유하는 지상건물을 丁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甲, 乙, 丙이 丁에게 지는 보증금반환채무는 급부(금전채무)가 가분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에 해당한다.
  - ⑤ 丙이 X 토지를 甲, 乙과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였다면 甲,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성하며,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,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점유·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- 문 19.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에서 ( )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[사례 I]  
甲, 乙 사이에 시계의 수선계약이 체결되었다. 그런데 시계수리상 乙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, 시계주인 甲이 丙에게 시계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. 丙으로부터의 시계 인도청구에 대하여 시계수리상 乙은 수리비채권에 기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( 가 ), 유치권을 주장할 수 ( 나 ).

[사례 II]  
A, B 사이에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. 임차인 B가 임대인인 건물소유자 A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이 제3자 C에게 전부(轉付)된 후에도, B는 A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채권에 기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( 다 ), 유치권을 주장할 수 ( 라 ).

- ① 가-없고 나-있다 다-있고 라-없다
  - ② 가-없고 나-있다 다-없고 라-없다
  - ③ 가-없고 나-있다 다-있고 라-있다
  - ④ 가-있고 나-있다 다-있고 라-없다
  - ⑤ 가-있고 나-없다 다-있고 라-없다
- 문 20.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상속재산과 공유물에 대해서는 모두 일정기간 동안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.
  - ② 상속재산의 분할과 공유물의 분할이 있는 경우, 그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고,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.
  - ③ 재판상 분할에 의할 경우, 상속재산분할은 사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, 공유물분할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.
  - ④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협의분할의 방법으로서 현물분할, 환가분할, 가격배상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  - ⑤ 상속재산분할협의를와 공유물분할협의를 모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- 문 21.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甲, 乙이 丙에 대하여 1,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(甲, 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), 한편 甲은 丙에 대하여 8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甲이 상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, 乙은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.
  - ② 甲, 乙이 丙에 대하여 기한이 없는 1,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,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.
  - ③ 甲, 乙이 丙에 대하여 1,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(甲, 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), 甲이 위 연대채무의 발생 원인이었던 甲, 丙 사이의 원인계약을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,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해 1,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.
  - ④ 甲이 丙에 대하여 1,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, 乙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, 본래 상사(商事)채권이었던 丙의 甲에 대한 채권이 甲과 丙 사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면, 본래 상사채무였던 乙의 丙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다.
  - ⑤ 甲, 乙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1,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, 甲이 丙에 대한 8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채권과 상계하였다면,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200만원으로 감축된다.

- 문 22.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, 주소 및 성명을 자서(自書)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,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,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  - ③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장에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,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.
  - ④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,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,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.
  - 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유언자의 날인에는 무인(捺印)도 포함된다.

- 문 23. 甲과 乙의 과실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甲과 乙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,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이 丙에게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때에 이미 乙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,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  - ② 甲이 丙에게 전액배상을 한 후에 다시 乙이 丙에게 전액배상을 한 경우, 甲이 乙에게 전액배상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
  - ③ 甲이 丙에게 자기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인 손해의 1/2만을 배상한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- ④ 丙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 1억원 중 일단 6,000만원만을 甲에게 청구하는 일부청구소송에서, 피해자 丙에게도 30%의 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, 법원은 甲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4,200만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.
  - ⑤ 만일 甲과 丙이 균인이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丙이 사고를 당하였다면, 민간인인 乙은 丙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문 24.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, 다시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丙은 乙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바, 이 경우 乙은 무자력이어야 한다.
- ②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, 甲은 丙에 대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.
- ③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, 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이 소송제기를 알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乙에게 미친다.
- ⑤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,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면,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할 수 있다.

문 25.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대금 1억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 후 甲은 위 부동산을 丙에게 대금 1억 2,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ㄱ.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, 그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라 현재의 위 부동산 시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ㄴ.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, 乙은 직접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ㄷ.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,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ㄹ.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,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.
- ㅁ.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, 丙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丁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면,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.

- ① ㄴ, ㄷ
- ② ㄱ, ㄴ, ㅁ
- ③ ㄱ, ㄴ, ㄷ, ㅁ
- ④ ㄱ, ㄷ, ㄹ, ㅁ
- ⑤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26.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②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, 임차인은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시까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③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.
- ④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승계된 경우, 현재의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매수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여야 하고,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.

문 27. 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, 그 후 丙이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丙을 상대로 乙,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갈음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소판결의 효력은 乙과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.
- ② 甲은 丁을 상대로 乙, 丙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, 직접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甲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丙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때, 자신도 乙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⑤ 甲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甲이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,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乙의 丙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까지 안 날을 말한다.

문 28.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다. 甲과 乙은 甲의 모 丙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. 그러던 중 甲이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다. 사망 당시 乙은 甲의 자를 포태하고 있었으며 3개월 후 丁을 출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망한 甲과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위 소송은 乙이 甲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.
- ② 乙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, 사망한 甲과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.
- ③ 丁의 친권자인 乙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甲과 丁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丁과 甲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④ 丁이 출생한 후, 乙이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,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丙의 상속권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甲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택임차인의 지위는 乙이 단독으로 승계한다.

문 29.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모른 경우에는,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,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③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,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계약 당시에 매도인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으나, 매수인은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,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,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30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.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-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상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,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.

문 31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.
-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(대가관계)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,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(보상관계)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
- ③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.
- ④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, 요약자의 계약해제 후에는 낙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,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.

문 32. 포괄유증과 상속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지만, 포괄유증의 수유자가 유증자의 사망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.
- ②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가 있지만, 포괄유증의 수유자는 그러한 상속분 양수권을 갖지 않는다.
-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포괄유증의 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지만,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.
- ⑤ 포괄유증의 수유자와 상속인은 유증자(내지 피상속인)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.

문 33.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ㄱ.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, 또한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.
- ㄴ.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, 채권자의 최고기간이 상당하다고 보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ㄷ. 매매계약에 기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,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,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ㄹ.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, 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.
- ㅁ.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가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,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ㄷ, ㄹ
- ③ ㄱ, ㄷ, ㅁ
- ④ ㄱ, ㄹ, ㅁ
- ⑤ ㄴ, ㄷ, ㄹ

문 34. 만 17세로서 고등학교 3학년생인 甲은 길을 가던 乙과 언쟁을 벌이다 그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해자의 책임변식능력은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자의 사리변식능력보다 고도의 주의능력이다.
- ②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될 때, 甲이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
- ③ 乙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등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
- ④ 甲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甲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고 그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, 甲의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.
- ⑤ 乙의 체질적 소인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이 밝혀진 경우,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문 35.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를 위한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, 법원의 선임절차 없이 법정후견인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정하여진다.
-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양(養)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, 생(生)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이 개시된다.
-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자신이 소집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,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.
- ④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,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- 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, 친족회의 동의를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때에는,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.

문 36.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, 양 채무가 객관적, 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.
- 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,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고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,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- ④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,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, 이행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지체책임의 발생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결과로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,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문 37.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한국 남자 甲과 중국 여자 乙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乙의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여, 중국에서 그곳의 방식에 따라 혼인한 경우, 국내에서 그 혼인은 무효이다.
- ②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친 후, 다시 우리나라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가 아니라 창설적 신고이다.
- ③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, 일단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.
- ④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송을 하였으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시, 읍,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, 그 혼인은 사망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.
- ⑤ 甲과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乙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, 그로부터 1년 후 甲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, 그 효력을 다투지 않고 부부생활을 계속해 왔다면 그 혼인은 유효하다.

문 38. 자수성가로 큰 부를 축적한 甲은, 사망하기 2년 전에 출가한 딸 乙에게 10억원을,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A 양로원에 14억원을, 사망하기 6개월 전에 B 재활원에 10억원을 각각 증여하였다. 그리고 총재산 90억원을 남기면서 사망할 때에 이를 Y대학의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는 유언을 하였다. 그런데 甲의 사후 甲에게는 X은행에 부채가 47억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. 甲의 처 丙과 자 丁이 유류분 청구를 하였을 경우, 상속재산 중에서 丙과 丁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?(乙, 丙, 丁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)

- ① 丙 : 9억원,            丁 : 6억원
- ② 丙 : 13억5,000만원, 丁 : 9억원
- ③ 丙 : 16억5,000만원, 丁 : 11억원
- ④ 丙 : 27억원,           丁 : 18억원
- ⑤ 丙 : 33억원,           丁 : 22억원

문 39.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(子)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친권자인 모(母)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자인 자(子)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(子)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.
-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(子)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,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인 자(子)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.
- ③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(子)간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공동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친권자인 모(母)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고, 또한 미성년자인 자(子)의 상속을 포기하여, 결국 성년자인 다른 자(子)가 피상속인인 부(父)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이다.
- ⑤ 친권자인 모(母)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(子)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.

문 40.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혼인파탄에 과실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하던 중 이혼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소송은 모두 종료된다.
- ②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생환하더라도 전혼(前婚)관계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그 유기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.
- ④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(민법 제840조 제3호)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-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는다.